

# 特章Ⅱ

## 畜產法 施行規則 改定令 関係法 條文解説 및 種鷄登録 頃次

### 편집부

- ……지난 8월 9일 농수산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
- ……바 있다. 이에 다시 농수산부와 각도 양계 담당자 및 대한……○
- ……양계협회의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마친후 11월 8일 종계의……○
- ……심사기준과 종계등록절차를 고시하였기에 게재하는 바이다.……○
- ……아울러 관계법 조문에 대한 해설을 소개한다. ……<편집부>○

### 1. 畜產法 施行規則中 改正令(農水產部令 第576號 74.8.9公布)

#### 第25條 (孵化業者の 登錄)

- ③項 ;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의 有效期間은 1年으로 한다.
- ④項 ; 第3項의 有效期間은 申請에 의하여 更新할 수 있다.
- ⑤項 ; 道知事が 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 또는 登錄의 更新를 받은 때에는 別紙 第11의 2號 書式에 依한 登錄畢證을 交付한다.

#### (解說)

孵化業者が 登錄當時는 第28條의 2의 孵化場施設基準에 맞추어 登錄을 畢하나, 登錄後 變動事項이 發生時에 登錄機關에 變動日로부터 20日 以內에 申告도록 하여隨時 孵化場의 實態를 파악케 하고 業務的인 指導監督이 可能도록 되어야 할 것이나 登錄後 이를 履行치 않으므로 이를 制裁할 法的根據가 없으므로 登錄의 有效期間을 1年으로 定하고 有效期間이 經過하였을 때에는 更新을 義務화시키는바 있음.

#### 第26條 (種卵의 選擇)

孵化業者が 孵化用으로 使用하는 種卵은 第26條의 2의 規定에 依하여 道知事의 認定을 얻은 種鷄에서 生產된 卵으로서 第26條의 12의 規定에

依하여 種鷄確認番號가 表示된 것이어야 한다.

#### (解說)

既定條文은 種卵의 檢查를 規定하였으나 急進의 飼養業의 發展으로 種鷄의 系統이 多樣하여 現時點으로는 種卵의 檢查基準이 不合理할 뿐 아니라 實際上 種卵의 檢查節次에 모순이 있는 것 이므로 이를 種鷄의 審査過程을 거쳐 登錄된 種鷄에서 生產되고 種卵의 表示가 있는 것으로 種卵의 選擇을 하도록 改正하고 種卵의 檢查規定은 別途 獨立條項(第26條의 14)을 設定하였음.

#### 第26條의 2 (種鷄確認)

- ①項 ; 種鷄를 飼育하는 者(以下 種鷄業者라 한다)는 別紙 第11의 3號 書式에 依하여 管轄郡守를 거쳐 道知事에게 種鷄確認을 얻어야 한다.
- ②項 ; 道知事が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種鷄確認을 함에 있어서는 農水產部長官이 指定하는 種鷄에 關한 權威있는 機關(以下 審査機關이라 한다)에 種鷄與否에 關한 審査를 委嘱하여야 한다.

#### (解說)

가. 飼養產業을 보다 效果적으로 發展시키기 위하여는 無秩序한 孵化를 止揚케 하고 信任할 수 있는 優良한 初生雛의 普及이 先行되어져야 하는 事項이므로 이를 規制하여 飼養家의 被害

를 防止하고서 種鷄의 審査를 實施하고 審査結果 種鷄로서의 價値가 認定된 것에 限하여서만 活用이 가능하도록 함.

- 나. 種鷄審査는 一般 農產技術職으로는勘當키 어려운 專門的 技術事項이 많은 것이므로 種鷄에 對한 專門的인 學識과 技術이 兼備되고 특히 育種繁殖에 對한 知識이 있는 者만이 實施할 수 있는 것이므로 全國的인 事項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農水產部가 指定하도록 規定하였고,
- 다. 審査는 種鷄를 飼育하고 種鷄로써 活用코자 하는 者의 出願에 依하여 實施하도록 한 것임.

### 第26條의 3 (種鷄審査基準)

種鷄의 審査는 이를 用途別, 世帶別, 系統別로 区分하여 實施하되 그 基準은 農水產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한다. (後面의 告示 事項의 參照)

#### (解說)

種鷄의 用途別 : 採卵鷄, 肉用鷄

種鷄의 世帶別 : PL(純鷄)

種鷄의 世帶別 : G.P.S.(原種鷄)

種鷄의 系統別 : 例示 審試 735, 한협 122B Hy-line, Hisex, Babcock

### 第26條의 4 (手數料)

第26條의 2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審査機關을 申請人에 對하여 道知事가 農水產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定하여 告示하는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 (解說)

第26條의 2 第2項의 規定에 따라 農水產部長官이 指定한 審査機關에 種鷄의 審査를 委嘱한 各道知事는 所定의 審査手數料를 支給함이 妥當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事項이나 手數料는 事業의 利害關係인 種鷄飼育家가 出願에 依하여 實施케 되는 것이므로 種鷄飼育家 負擔으로 하는 것이 原則인 것이며 審査機關의 任意徵收로 因하여 惹起될 수 있는 諸般物義를 防止하기 위하여 農水產部長官의 承認된 範圍內에서 徵收할 수 있도록 함.

### 第26條의 5 (種鷄確認書等)

道知事는 第25條 2의 規定에 依하여 種鷄確認을 한 때에는 別紙 第11의 4號 書式에 依한 種鷄確認書를 交付하여야 하며 第11의 5號 書式에 依한 種鷄記錄簿에 그 事實을 記載하여야 한다.

#### (解說)

道知事が 確認證明을 發給하고 種鷄記錄簿를 儲置도록 한 것은 確認證明의 根據를 保存케 한다는 面보다도 登錄된 種鷄의 記錄을 永久히 保存하여 種鷄의 移動狀況을 파악하고 不純鷄의擴散을 防止한다는 見地에서 道單位에서 正確히 記錄保存케 한 것임.

### 第26條의 6 (種鷄表示)

道知事は 第26條의 2의 規定에 依하여 種鷄確認을 한 種鷄에 對하여 審査機關으로 하여금 農水產部長官이 定하는 種鷄表示를 하게 하여야 한다.

#### (解說)

種鷄는 移動性이 많을 뿐 아니라 世帶別, 系統別區分이 外觀上 識別이 難하므로 孵化業者나 種鷄飼育業者の 不正行爲를 防止하고 純粹系統을 區分管理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種鷄表示를 하도록 規定하였으며 이는 審査當時(即時) 標識을 實施함이 實效를 거두게 될 것이므로 審査에 附하는 機關으로 하여 表示를 하게 함을 義務規定으로 定한 것임.

### 第26條의 7 (種鷄確認의 取消)

①項 : 道知事은 다음 각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種鷄確認을 取消할 수 있다.

1. 許偽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種鷄確認을 얻었을 때
2. 種鷄가 家畜傳染病 豫防法과 規定에 依한 家畜傳染病 또는 傳染性 疾病에 感染되었을 때
3. 其他 種鷄에 關한 道知事의 命令에 違反하였을 때

②項 : 道知事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種鷄確認을 取消한 때에는 遲滯 없이 第26條의 5의 規定에 依하여 交付한 種鷄確認書를 回收하여야 한다.

#### (解說)

前條의 解說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種鷄의 區分은 外觀的으로 事實上不可能한 것이므로 許偽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을 받을 수 있는 素地가 充分한 것이므로 이를 法으로 徹底히 規制함과 아울러 行政命令을 遵守치 않고 任意로 營業을 持續할 수 있었던 前例를勘案할 때 政府가 示圖하는 方向으로 養鷄產業을 誘導케 함에는 命令 違返者에 대하여는 果敢히 이를 是正케 하고자 本項을 新設하였고 能力과 血統이 確實한 種鷄라 하더라-

도 傳染性疾患에 感染된 것은 病의 傳播가 甚히  
憂慮되므로 이를 防止하는 見地에 取消對象으로  
定한 것임.

※ 取消業者는 國內畜產地에 揭載하여 이를 모든  
養畜家에게 公開

#### 第26條의 8 (報告 및 告示)

道知事は 種鷄를 確認 또는 取消한 때에는 遲滯  
없이 農水部長官에 報告하여야 하며 報告를 받은  
農水產部長官은 이를 即時 告示하여야 한다.

#### (解說)

種鷄의 登錄狀況을 널리 周知시킴으로서 利用者の  
의 選擇에 便宜를 提供케 하고 種鷄의 動態를 正  
確히 파악하여 養鷄施策樹立을 위한 基礎資料로  
써 活用케 함에 있음.

#### 第26條의 9 (種鷄의 衛生検査)

道知事は 種鷄에 對하여 每年 2回 以上 衛生検査  
를 實施하여야 한다.

#### (解說)

닭은 傳染性疾患에 感染된 것은 아니라 雛白痢  
病등은 生產卵에 傳播시켜 初生雛 生產에 미치는  
영향이 至大하므로 이를 徹底히 檢查하여 保菌鷄  
의陶汰를 履行하도록 하고 檢查를 畢한 種鷄場  
에 對하여는 家畜傳染病豫防法 第6條 規定에 依  
한 檢查畢證을 交付하도록 되어야 할 것이며 아  
울러 道知事은 家畜傳染病豫防法 第6條 規定의  
依하여 消毒等 必要措置를 取하고 結果를 點檢  
하여야 함.

#### 第26條의 10 (種鷄의 隔離飼育)

種鷄는 이를 用途別, 世帶別, 系統別로 區分하여  
隔離 飼育하여야 한다.

#### (解說)

外觀上의 區別이 至難한 것이므로 混飼는勿論  
混合이 되지 않도록 遠距離에 격리飼育케 하므로  
써 信憑性있는 世帶別 系統別 種鷄가 普及케 하고  
져 한데 있음.

#### 第26條의 11 (種卵의 規格)

種卵은 農水產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規格을  
갖추어야 한다.

#### (解說)

改正前의 農水產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規格에  
依하여 지난 64. 1. 28日字로 農林部告示 第846號  
로 種卵規格基準을 定한바 있으나 其後 많은 系  
統의 品種이 外國으로부터 導入되고 國產鷄가 開  
發普及됨에 따라 系統品種別 特性에 依하여 規格  
基準이 不合理하므로 이를 現實에 符合되도록

農水產部告示 第2607號로 지난 10月  
29日付로 告示하였음.

#### ※ 種卵의 規格基準

1. 種鷄確認을 받은 닭에서 生產된 알로서  
固有의 特徵을 具備한 것.
2. 雛白痢 및 닭의 呼吸器性 마이코프라즈  
마병 檢索結果 陰性인 닭에서 生產된 것.
3. 農水產部長官이 第26條의 7 第1項 第2  
號의 規定에 依한 家畜傳染病 또는 傳染  
性疾病에 感染되지 아니한 닭에서 生產된  
것.
4. 알의 무게는 53g 이상인 것. 但, 小型 닭  
의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5. 產卵後 10日이 經過되지 아니한 것.
6. 汚物이나 微生物에 汚染되지 아니한 것.
7. 種卵의 内部에 血斑과 肉斑이 없는 것.
8. 卵殼質이 充分한 것.
9. 卵形이 畸形이 아닌 것.

#### 第26條의 12 (種卵의 表示)

種鷄業者は 種鷄가 生產한 種卵이 第26條의 11의  
規定에 依한 規格에 該當되는 때에는 種卵에 그  
種卵을 生產한 種鷄의 區分에 따라 別紙 第11號  
書式에 依한 種鷄確認番號를 表示하여야 한다.

#### (解說)

種鷄의 區分이 外觀上으로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  
로 種卵의 區分도 어려운 것이라 種卵利用의  
識別를 容易하게 하고 他品種과의 混合을 防止하  
여【따라서 표식에 依하여 種卵生產場을 가려낼  
수 있게 하므로써 善良한 方法으로 種卵이 生產  
되고 供給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制度이나 表示  
는 種鷄業者 스스로 實施하게 되므로써 未達卵의  
供給이 憂慮되는 點도 있으나 種卵自體에 表示된  
표식으로 生產者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永續的인 事業을 이끌어 가기 爲하여 未達品의  
供給問題는 스스로 自制케 될 것으로 믿어지는  
것임.

#### 第26條의 13 (種卵의 孵化)

孵化業者は 同一孵化器 内에서는 同一種類의 種  
卵만을 孵化하여야 한다.

#### (解說)

一部 孵化業者は 孵化에 알맞는 種鷄를 飼育치 않고  
種卵을 購入活用하고 있으며 購入過程에서 單

一系統의 需要量 確保가 至難할 경우 또는 購入種卵의 價格等의 事由로 여러 系統을 同一孵化器에서 同時に 孵化케 되므로써 一般養鷄家에 미치는 영향이 至大하므로 이를 彻底히 規制케 한 것임.

#### 第26條의 14 (種卵의 檢查)

道知事는 1年에 2回 以上 種卵의 規格 및 表示狀況을 檢查하여야 한다.

##### (解說)

本條項은 既定法 第26條 1項의 事項을 補完한 것으로써 種卵의 規格을 定하고 種卵 表示의 義務를 誠實하게 履行케 하기 為한 行政機關의 指導監督의 義務를 規定하여 法 執行의 彻底를 期하게 함을 目的한 것이므로 種卵의 需要가 가장 많은 春秋季節에 種鷄場別로 彻底한 檢查를 하여야 할 것임.

#### 第26條의 15 (初生雛 箱子表示)

孵化業者는 種卵을 孵化한 때에는 種卵의 種類에 따라 初生雛를 區分하여 收容하여야 하며 그 收容 容器에는 用途別, 世帶別, 系統別 表示를 하여야 한다.

##### (解說)

種鷄 種卵의 標識目的과 같이 初生雛 收容箱子에도 種鷄區別 表示를 當然히 履行케 하여야하는 事項이나 誠實히 履行되지 않을 憂慮가 있으므로 이를 法으로 規定하였음.

#### 第28條 (合帳備置)

種鷄業者 또는 孵化業者는 種鷄場 또는 孵化場에 種卵 및 初生雛 搬出入 狀況을 設錄한 帳簿을 備蓄管理하여야 한다.

##### (解說)

種鷄確認을 為한 基本資料는 種鷄業者나 孵化業者가 分譲한 首數(裸數)가 基礎가 될 뿐만 아니라 種鷄業者나 孵化業者가 生產可能한 範圍內에서 誠實하게 生產普及하였는지의 與否를 調査確認할 수 있게 하므로써 不良하거나 系統이 不確實한 初生雛가 無秩序하게 出荷되는 것을 防止하고 犬의 需給實態를 正確히 파악하여 養鷄施策立案의 基本資料로 活用코자 하는데 目的을 둔것임.

別表 : 離化場 施設基準中 第1號를 다음과 같이하고  
第5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 孵化場과 鷄舍는 疾病에 感染됨이 없도록 그 位置 地形等을 考慮하여 500m 以上 隔離施設하여야 한다. (改正)

(※ 改正前條文 : 1. 孵化場과 鷄舍에는 疾病에

感染됨이 없도록 다른 구내에 격리 施設하여야 한다.)

2. 孵化舍 内의 施設은 事務室, 孵化室, 保管室 (種卵 集卵 消毒) 初生雛室(保管 鑑別出荷) 燒却場 便所等을 具備하되 孵化室, 保管室 및 初生雛室은 다음 각號의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等 耐久性이 있고 견고한 資材를 使用하고 排水에 便利한 構造를 갖출 것

나. 내벽은 내수성 材料를 使用하여 벽은 콘크리트 타일, 석조等 견고한 物質로써 防水와 청소에 便利하도록 축조할 것

다. 천정은 낙진, 낙수를 防止할 수 있는 資材를 使用하여 청결하도록 할 것.

라. 건강한 병아리를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온도, 습도 및 환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마. 방충, 방서 시설을 할 것

3. 初生雛 輸送箱子는 消毒하여 1회에 限하여 使用하여야 한다.

4. 孵化場의 出入口에는 消毒盤을 設置하여야 한다.

5. 孵化場內에는 孵化場 登錄單證과 孵場検査證을 부착하여야 한다. (新設)

#### 附 則

##### ②項(經過措置)

이 令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한 孵化業者는 이 令施行日로부터 6月 以內에 이 令의 規定에 依한 孵化場 施設基準을 補完하고 道知事에게 再登錄하여야 한다.

##### (解說)

當令이 74. 8. 9日字로 公布 施行되었고 經過措置

②項規定에 依하여 6個月 以內에 既存 孵化業者는 再登錄을 做하도록 되어 있어 늦어도 75. 2. 日까지는 諸般措置를 取하여야 되도록 되어 있으며 本令은 公布日로부터 施行케되어 있다는 點을勘案하여 新規業者는 勿論 既存業者까지도 施設補完을 促求하여 基準未達業者에 對하여는 營業行爲를 禁止토록 하여야 할 것임.

또한 本 施行規則 第29條規定에 依한 孵化場検査는 彻底히 履行토록 하고 未達業者는 營業을 規制하여야 하는 것임.

축산법시행규칙 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종계의 심사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

1974. 10. 29

## 농수산부장관 정 소 영

## 종 계 심 사 기 준

## 1. 종계구분

용도별	세대별	계통별	비고
채란계	순계 (P.L)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그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탑	순계 (P.L)…탑의 육종 또는 원종계 (G.P.S)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탑으로 계통 고유의 형질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탑
	원종계 (G.P.S)		원종계 (G.P.S)…종계 (P.S)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탑으로 형식이 확실한 것
	종계 (P.S)		종계 (P.S)…실용계 (CC)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탑
	순계 (P.L)		
	원종계 (G.P.S)		
	종계 (P.S)		

## 2. 실격

- 가. 실용계 (CC)
- 나. 원종계 (G.P.S) 또는 종계 (P.S)의 부계열에서 생산된 부계 (암컷) 및 모계열에서 생산된 부계 (수컷)
- 다. 교배방식이나 계통이 불명한 것
- 라. 축산법시행규칙 제26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종계확인을 받지 아니한 탑
- 마. 축산법시행규칙 제26조의 7 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 또는 전염성질병에 감염된 탑
- 바. 종계로써 건강하지 못하고 외관상 또는 생리상 결함이 있는 탑

각 시 도지사에게 제11의 3호 서식에 의한 종계 확인 신청서 3부 원산지 증명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계확인 신청서 기재요령(종계확인신청서 양식 삽입)

(별지. 11의 3호 서식)

종계확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소유자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생년월일 (4) 주소
종계장	(5) 명칭	(6) 소재지	
(7) 용도			
(8) 세대			
(9) 계통			
교배방식	(10) 부계	(11) 모계	
수량	(12) 암	(13) 수	
원산지			
입출년월일			
특정			

축산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종계확인을 신청합니다.

1974년 월 일  
 신청인 인  
 도지사 귀하

## 種鷄確認節次

## 1. 種鷄確認申請

종계(순계, 원종계, 종계) 등록을 받고자하는 자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종계 입식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를 경유하여

①~④는 종계소유자(법인일 경우 대표이사)의 것을 기재

⑤ 명칭→종계장 명칭을 기재(○○○부회장종계장)

하고 종계장 명칭이 없을 경우는 없음으로 기재

⑥ 소재지→종계장 소재지를 기재(시도, 군, 읍, 면 리, 번지)

⑦ 용도→산란계, 육용계로 기재

⑧ 세대→순계(P.L), 원종계(G.P.S), 종계(P.S)로 기재

⑨ 계통→닭의 명칭(상품명)을 기재함. 상품명이 없는 것은 “없음”으로 기재(예: 산란계 경제능력 검정성적 품종계명 난에 기재된 닭의 명칭)

교배방식 ⑩~⑪→종계의 명칭 품종 계통(미네소다 계성환계 등) 명을 기입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계통간 교배, 품종간 교잡, 군교계간 교배 등으로 표시한다.

수량→신청 당시의 수수를 기재한다.

원산지→직접 생산한 번식자를 말함. 예로 국내 G.P.S농장에서 종계를 구입한 경우는 G.P.S. 농장 또는 회사명 외국에서 수입한 경우 외국의 농장 또는 회사명을 기재함.

특징→보색 기타 특징을 기재

후면에는 종계장 위치 약도를 기재하고 전화가 있을 경우 전화 번호를 기재

## 2. 種鷄確認審查의뢰

종계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각 시도지사는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즉시 종계심사기관인 대한양계협회에 종계확인신청서 1부 원산지증명 1부를 첨부하여 종계확인 심사를 의뢰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에 2항)

## 3. 種鷄確認審查

대한양계협회는 도지사로부터 종계확인심사 의뢰를 받는 즉시 축산법 시행규칙 제26조의 3 종계심사기준에 의하여 종계심사위원회 및 전문담당직원이 현지 출장(종계장) 종계확인 심사를 한다.

## 4. 種鷄確認審查結果通報

대한양계협회는 종계확인 심사결과를 각 도지사에게 회신한다. 결과 회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종계확인심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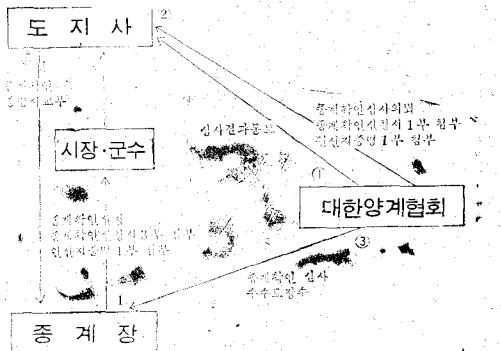
## 5. 種鷄確認證明

대한양계협회의 종계 확인 결과에 따라 축산법 시행규칙 제26조의 5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제11의 5호 서식의 의한 종계기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제11의 4호 서식에 의한 종계 확인 증명서를 교부한다.

## 9. 種鷄確認審查수수료

종계확인을 신청한 종계장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26조의 4 규정에 의한 소정의 수수료(수당 순제 1원, GPS 100원, P.S.50원)를 종계확인심사 이전에 대한양계협회에 직접 또는 대체구좌 서울 1927로 송금한다.

종계등록체계



※ 원산지 증명은 종계를 구입할 때 판매농장 또는 회사에서 발급한 종계증명서, 외국에서 직접 수입한 경우는 외국공인 기관에서 확인한 종계증명서

## 종계심사위원회명단

성명	직업	비고
오봉국	서울대농대축산학과교수	가금육종학전공농학박사
오세정	건국대축산대학과교수	가금학전공
최창해	서울산업대학수의학과교수	"
이재근	고려대농대축산학과교수	가금학전공농학박사
설동섭	축산시험장번식육종담당관	육종학전공농학박사
박근식	가축위생연구소계역담당관	제역전염병연구원
김동곤	국립종축장경영관리과장	가금육종학전공
양계협회부회장	1명	
부회업계대	1명	
계	9명	